

강원관광대학 위원회설치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강원관광대학(이하 “본 대학“이라 한다) 직제규정 제도에 의하여 대학행정의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학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절차)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부서의 장이 사전에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3 조 (구성) 각 위원회는 학장이 위촉(임명)하는 교직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.

제 4 조 (위원의 임기) 각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그 보직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5 조 (규정) 각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, 그 규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.

제 6 조 (소집과 의결)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각 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7 조 (회의록)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 및 위원장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시행) 각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학장의 결재를 얻은 후 시행한다.

제 9 조 (사무) 각 위원회는 간사 또는 서기를 두어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경과조치) 이 규정은 실시 이전에 시행된 위원회 설치규정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